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7. 14 선고 2022나5088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재단법인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
담당변호사 장호식

피고, 피항소인 C

변 론 종 결 2022. 6. 9.

판 결 선 고 2022. 7. 14.

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2. 선고 2021가단6376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D 대 1,106.7㎡ 중 E의 지분(2,479.9분의 75.22)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89. 5. 10. 접수 제452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2. 1. 10.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주문과 같다1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E은 1988. 9. 30. 서울 양천구 D 대 1,106.7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 중 2,479.9분의 75.22 지분에 관하여 1988. 9. 29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1989. 5. 10.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9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나. 이 사건 토지는 1996. 12. 19. 그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한편, 원고는 1998. 5. 22. 서울 양천구 D 제4층 F호(이하 '이 사건 구분건물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1998. 4. 1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원고는 2022. 1. 10.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금 제514호로 피고를 위하여 9,000,000원을 공탁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민법 제36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, 피고에게 채권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권최고액을 모두 변제공탁하였는바,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2. 1. 10.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유석동, 판사 김현주, 판사 임효빈

1)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포하여 판단한다.